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관련 협조 요청

1. 귀 단체(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 이전,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 2017.8.14.~ 2017.9.29. 기간 동안 <붙임1>과 같이 특별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고, <붙임2>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도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 붙임 : 1.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현황 1부.
2.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 끝.

공정거래위원회

수신자 대한상공회의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대한건설협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

행정사무관 이용만 행정사무관 대결 2017. 8. 7.
곽고은

협조자

시행 제조하도급개선과-960 (2017. 8. 7.) 접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어진동)

전화번호 044-200-4603 팩스번호 044-200-4657 / ikym@ftc.go.kr / 대국민 공개

더불어 잘사는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붙임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지 역	설치기관		업무분장	전담자 전 화 번 호(FAX)
수도권	공정위서울 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02-2110-6146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02-2110-6161 (02-2110-0655)
	분쟁 조정 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상담	02-2056-0047 (02-2056-0049)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3485-8382 (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2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1-460-1041 (051-460-1004)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62-975-6841 (062-975-6800)
대전·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신고센터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03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42-481-8018 (042-481-802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3-230-6343 (053-742-9150)

* 신고센터 총괄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044-200-4603)

<붙임2>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